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1/6

2012.08.29.제정 2014.02.01.개정 2015.04.01.개정 2018.04.17.개정 2019.10.01.개정 2020.09.25.개정 2022.04.15.개정 소관부서 : 교무처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부산경상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.) 전임교원의 대학 내 창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신청 절차를 명확히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적용 범위) 이 규정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이 별도의 사업공간 없이 대학내에서 사업등록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.
- 제3조(신청 요건) 대학 내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(이하 "창업 신청자"라 칭한다.)은 먼저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창업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예비 "벤처기업 확인"을 받아야 한다. 단, 기획위원회의 승인을 얻을 경우 예비 벤처기업 확인에 대한 조항은 유예할 수 있다.<개정 2018.04.17.>
- 제4조(신청서류) 위 요건을 충족한 창업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09.25.>
 - 1. 사업 계획서
 - 2. 교수 창업(겸・휴직) 승인서(별지 제1호 서식)
 - 3. 정부기관의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
 - 4. 학과(계열) 교수 2/3 이상의 동의서(별지 제2호 서식) <개정 2019.10.01.>
 - 5. 교원 창업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<신설 2019.10.01.>
- 제5조(심의) 접수된 신청 서류는 기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최종 결정한다. 단, 기획위원회 심의에서 판단하여 "벤처기업 확인"을 유예할 경우 신청서류 중 정부기관의 예비 벤처기업 확인서 사본은 생략 할 수 있다.<개정 2018.04.17.>
- **제6조(사업자 등록)** 창업 신청자는 관할 세무서에 대학내에 주소를 두는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 사업자를 등록하여야 한다.
- **제7조(휴직)** 창업 신청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휴직 허용기간 및 횟수는 최대 24개월, 2회 이내로 한다.<조개정 2015.03.25.>
- 제8조(대학발전기금) 창업신청자는 대학발전기금으로 전체 주식 중 5%를 기부할 수 있다.<개

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2/6

정 2018.04.17.>

- 제9조(외부 벤처창업 및 겸직 허가) ① 본 대학 창업 신청자가 대학 외부에서 벤처기업을 창업할 경우 모든 행정절차는 이 규정에 따른다.
 - ② 겸직 허가 없이 외부 벤처기업 임직원을 겸직하였을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.
 - ③ 겸직 허용기간 및 횟수는 최대 24개월, 2회 이내로 한다.<항신설 2015.03.25.>

제10조(세부 사항) 이 규정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14.02.01.)에 의하여 본 규정 관련 업무를 『산학처』에서 『교학처』로 이관하고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0.09.25.)에 의하여 『교학처』를 『교무처』로 명칭 변경하고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3/6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본교 행정조직 개편(2022.04.15.)에 의하여 『학생산학취업처』를 『산학처』로 ,『기획처』를 『기획실』로,『입학홍보처』를 『입시홍보실』 명칭 변경하고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4/6

[별지 제1호] <개정 2019.10.01.>

창업 승인서

법	인	명	
대	丑	자	
개 업	연	월 일	
사업	장소	재지	
본 점	소	재 지	
사 업	의	종 류	업태 종목

위와같이 창업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신청서를 확인하고, 창업에 대해 운영 및 교원창업겸직을 승인합니다.

20 . . .

승인자					
부산경상대학교 총장					
0	0	0	(인)		

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5/6

[별지 제2호] <신설 2019.10.01.>

학과(계열) 동의서

OOOOO과/계열 OOO교수에 대한 교원창업 및 운영에 동의합니다.

1. 현황

법 인 명	
대 표 자	
개 업 연 월 일	
사업장소재지	
본점소재지	
사업의 종류	업태 종목

2. 학과(계열) 동의서

	학과(계열) 교수명:	학과(계열) 교수명:		
	(인)	(인)		
하 이 기	학과(계열) 교수명:	학과(계열) 교수명:		
확 인 자	(인)	(인)		
	학과(계열) 교수명:	학과(계열) 교수명:		
	(인)	(인)		

학과(계열)장	교수명:	(인)
---------	------	-----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



문서번호	BSKS-2-1-37
제정일자	2012.08.29.
최종개정일자	2022.04.15.
페이지 수	6/6

[별지 제3호] <신설 2019.10.01.>

창업 신청서

법 인 명									
대 표 자									
개 업 연 월 일									
사업장소재지									
본점소재지									
사업의 종류	업	태				종목			
<u>* </u>	¦적								
위와 같이 창업		운영さ	하고자	하오니	운영원	승인 및	교원창	업겸직을	허락하여
주시기 바랍니다	†.			20 .					
				۷0.	• •				
							신	청자	
						0	0	0	(인)

부산경상대학교 총장 귀하